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가단4162 판결 [건물명도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호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77.2㎡를 인도하고,

나. 35,66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24. 5. 27.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5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2022. 4. 15. 변경계약 체결), 피고가 22개월간의 차임을 미지급한 사실, 2023. 12.경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지미

별지